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윤후덕 · 김태년 · 강준현
박 정 · 한정애 · 서영석
김정호 · 정태호 · 김영환
홍기원 · 조승래 · 임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,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,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“연 300만원”을 “연 4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생 략)	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)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세대주등”이라 한다)가 2028 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 간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(<u>연 300만원</u> 을 납입한도로 하 며,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 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 한 금액만 해당한다)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 40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. ③ ~ ⑪ (생 략)	----- ----- ----.
	③ ~ ⑪ (현행과 같음)